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 연구비 규정

제정: 2016. 4. 19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에서 우수한 한국 소화기학 학술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본 연구비의 명칭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 연구비 (Korean Gastroenterology Fund for Future Development) 라고 한다.

제 3 조 (지원 대상) 지원 대상은 연 1명으로 연구비 5,000만원을 지급한다.

제 4 조 (지원 대상자의 자격)

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의 자격을 갖추고, 5년 이상 소화기학에 종사한 의사로서 소화기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.

제 5 조 (지원 대상의 추천)

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추천 구비 서류)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 1통 (소정양식)
2. 추천서 1통
3. 이력서 1통
4. 사진(명함판) 2매
5. 연구업적, 계획서 및 기타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(저서, 논문 등의 목록 2부 및 3개 대표논문 사본 2부)

제 7 조 (지원 대상 선정)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.

1. 심사위원회: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겸임하며, 심사위원장은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2. 심사절차: 기금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신청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.

제 8 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 본 연구비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비 수혜자는 2년이내에 대한소화기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구연 발표한다.

2. 3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SCI(E) 등재지에 게재한다.

3. 논문에 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한다.

4.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부 칙

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기금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2) 본 규정은 한국 소화기학 미래 발전 기금위원회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